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20년도 남해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1. 3. 23. ~ 4. 12.(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정 현 옥
- 위 원 : 장 동 찬
- 위 원 : 이 한 용
- 위 원 : 조 봉 수

남해군 NAMHAE-GUN **남해군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남해군수 귀하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로부터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같은 영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1년 3월 24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남해군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남해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남해군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이월사업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해군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정 현 옥** (인)

검사위원 **장 동 찬** (인)

검사위원 **이 한 용** (인)

검사위원 **조 봉 수** (인)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 ····· 1

Ⅱ. 결산 총괄 및 개요 ····· 2

1. 재정여건 ····· 2

2. 세입·세출 총괄 ····· 4

Ⅲ. 일반회계 ····· 5

1. 세입결산 개요 ····· 5

2. 세출결산 개요(**사고 · 명시이월 · 계속비 포함**) ····· 11

Ⅳ. 특별회계 ····· 14

1. 세입결산 개요 ····· 14

2. 세출결산 개요(**사고 · 명시이월 · 계속비 포함**) ····· 15

Ⅴ. 기금 결산 ····· 17

Ⅵ. 재무제표의 결산 ····· 18

1.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18

2.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19

Ⅶ. 성과보고서 ····· 20

Ⅷ.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 22

1. 채권결산 ····· 22

2. 채무결산 ····· 23
3.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 23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24
5. 예비비사용 ····· 25
Ⅸ. 금고의 결산 ····· 25
Ⅹ.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26
1. 세입분야 ····· 26
가.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 실시(모범사례) ····· 26
나.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 26
다. 세입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 27
라. 주요관광지 입장료 수입 예산 과다 편성 ····· 28
마.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에 대한 부과 징수 대책 마련 ····· 28
바. 도로 점·사용료 미수납액 관리 철저 ····· 29
사. 재원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경주 필요 ····· 29
2. 세출분야 ····· 31
가. 공설해수욕장 민간위탁금 사후관리 소홀 ····· 31
나.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및 절차 부적정 ····· 30
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 33
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 33
3. 예산분야 ····· 34
가. 예산의 편성 후 집행률 저조 ····· 34

나. 예비비 지출 결정 부적정 및 집행 철저 ····· 35
다. 합리적인 이월사업비 관리 ····· 36
4. 기타분야 ····· 37
가. 각종 공모사업 선정 성과 거양(모범사례) ····· 37
나. 교통사고예방 사업 투자 증대로 교통안전에 기여(모범사례) ····· 38
다. 성과보고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조치 미흡 ····· 38
라. 주요사업 적극 추진 필요 ····· 39
마.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미 징수 ····· 40
바.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40
사. 소방청사 정비에 따른 군비부담 부적정 ····· 42
아.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43
5. 정책분야 권고사항 ····· 44
가. 체계적인 군 청사정비(신축) 추진 ····· 44
나.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방안 강구 ····· 45
다. 전원마을 부지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 촉구 ····· 46
라. 각종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46
<사업장 현장 확인사진> ····· 48
Ⅺ.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50
<별지서식> 검사조서 ····· 60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1. 3. 24. ~ 4. 12.(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정현옥**	직무수행 총괄, 검사계획 수립, 기금 및 채권 검사	
위원	**장동찬**	세입·세출 결산 적부 확인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사	
위원	**이한용**	세입·세출 기본회계 검사 세입 부과 징수 및 계약 관련 검사	
위원	**조봉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검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자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의회 본청	3.24.	업무분장 및 재정상황 파악	
	3.25. ~ 3.29.	세입·세출, 보조금, 기금, 공유재산, 계약 등 관련자료 요청	
	3.30. ~ 4.1.	군정 주요 시책사업 현황 및 실태 조사	
		본청 결산 검사 실시	
직속기관	4.2. ~ 4.5.	직속기관 결산 검사 실시	
총괄	4.6. ~ 4.7.	사업장 현지 확인	
	4.8. ~ 4.12.	보충 자료 요청 및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총괄 및 개요

1 재 정 여 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일반회계	세입	410,040,584	472,195,342	499,199,337	558,092,892	564,626,811	
	세출	287,444,082	330,420,917	355,987,736	449,988,356	464,046,242	
	결산상 잉여금	122,596,502	141,774,425	143,211,601	108,124,536	100,580,569	
특별회계	세입	73,913,736	75,082,902	94,468,603	115,186,823	115,943,294	
	세출	36,352,462	29,055,152	33,068,558	51,988,636	105,053,646	
	결산상 잉여금	37,561,274	46,027,750	61,400,045	63,198,187	10,889,648	
총계	세입(수입)	496,931,344	560,014,661	593,667,940	673,279,715	680,570,105	
	세출(지출)	324,540,753	360,000,488	389,056,294	501,956,992	569,099,888	
	결산상 잉여금	172,390,591	200,141,173	204,611,646	171,322,723	111,470,217	

○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특별회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은 8.3%, 세출은 15.3%의 증가율을, 결산잉여금은 -8.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수입)은 8.4%, 세출(지출)은 1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결산상 잉여금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59,852백만원 가량 감소함.

○ 세출(지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현 연도에 13,248천원이다.

※ 2020. 12. 31. 주민등록 인구수 42,958명

남해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채무총합계	0	0	0	0	0	
공채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0	0	0	0	0	
채무총합계	0	0	0	0	0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구 분	재정지표	산정방식	산출액	비 고
채무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 / 총예산	0%	25%초과 주의 40%초과 심각
	채무상환비율	지방채무상환액 / 일반재원	0%	12%초과 주의 17%초과 심각
세입관리	지방세 징수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138.51%	50%미만 주의 0%미만 심각
자금관리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88.38%	20%미만 주의 10%미만 심각
재정건전성	재정자립도	지방세 + 세외수입 / 세입합계	8.38%	전국 평균 : 8.77% (2020년 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일반재원* / 세입합계	47.67%	전국 평균 : 59.96% (2020년 예산기준)

* 일반재원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재원

채무, 세입, 재정건전성 등 여러 관점에서 본 남해군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건전하게 채무, 세입, 자금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자체수입에 따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에 기인하여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세입 · 세출 총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674,856,763,870	680,570,105,299	569,099,888,391	111,470,216,908
일 반 회 계	559,779,104,590	564,626,811,147	464,046,242,361	100,580,568,786
특 별 회 계	115,077,659,280	115,943,294,152	105,053,646,030	10,889,648,122
상수도	24,004,217,100	24,652,628,128	22,255,683,190	2,396,944,938
의료급여기금	775,240,000	786,946,154	719,695,190	67,250,96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859,522,000	882,026,020	41,431,000	840,595,0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57,547,000	764,430,628	373,024,250	391,046,378
환경기초시설	33,310,018,180	33,398,461,193	27,896,207,250	5,502,253,943
청사건립	55,371,115,000	55,458,802,029	53,767,605,150	1,691,196,879

회 계 별	이 월 금			보 조 금 실제반납액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42,692,110,260	4,123,782,040	36,735,429,410	4,611,875,905	23,307,019,293
일 반 회 계	40,354,549,340	4,123,782,040	32,853,516,000	4,605,797,873	18,642,923,533
특 별 회 계	2,337,560,920		3,881,913,410	6,078,032	4,664,095,760
상수도	1,372,714,220				1,024,030,718
의료급여기금					67,250,96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840,595,0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5,409,000			4,549,800	321,447,578
환경기초시설	899,437,700		3,881,913,410	1,528,232	719,374,601
청사건립					1,691,196,879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80,570,105,299원으로 전년대비 7,290,389,583원(1.08%)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32.6%)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등(31.9%), 지방교부세(24.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4%), 지방세(3.8%), 세외수입(3.1%) 순이다.

○ 세출 결산액은 569,099,888,391원으로 전년대비 67,142,895,654원(13%)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19.5%), 농림해양수산(18.1%) 순이다.

○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 42,692,110,260원, 사고이월 4,123,782,040원, 계속비 36,735,429,41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611,875,905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3,307,019,293원이다.

○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그 내역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조서들과 대조한 결과 결산 개요의 총합과 일치하였다.

Ⅲ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개요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	559,779,104,590	566,998,789,856	564,626,811,147	910,794,730	1,461,183,979
2019	547,662,710,640	560,087,804,957	558,092,891,981	57,236,710	1,937,676,266
증감액	12,116,393,950	6,910,984,899	6,533,919,166	853,558,020	-476,492,287

구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부담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0	564,626,811,147	26,121,249,690	15,165,875,365	167,558,356,000	25,897,838,000	207,216,106,400	122,667,385,692
2019	558,092,891,981	14,405,037,620	13,764,537,030	200,936,930,600	21,269,608,000	163,076,018,380	144,640,760,351
증감액	6,533,919,166	11,716,212,070	1,401,338,335	-33,378,574,600	4,628,230,000	44,140,088,020	-21,973,374,659

○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수납액 5,646억원으로 전년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세입 과목별로 **징수 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액**을 보면 지방세는 2,844,087,590원, 세외수입은 5,638,117,039원, 지방교부세는 419,156,000원, 조정교부금 1,220,000,000원, 보조금 -369,884,600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581,829,691원의 차액을 확인하였다.

○ 수납액 564,626,811,147원은 예산액 559,779,104,590원 대비 4,847,706,557원 초과하여 수납하였다.

○ 전년과 대비하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 117억, 세외수입 14억, 조정교부금 46억, 보조금 44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333억, 보전수입 219억원 감소하였다.

○ 총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의 비율은 각각 7.3%와 70.9%이다.

※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모두 일치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64,626,811,147	564,626,811,147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 수 결 정 액	징수결정 대 비 수 납 액	징 수 결 정 대 비 불납결손액
2020	559,779,104	566,998,789	564,626,811	910,794	101.3%	99.5%	0.16%
2019	597,155,651	560,087,804	558,092,891	57,237	106.6%	99.6%	0.01%
증감	-37,376,547	6,910,985	6,533,920	853,557	-5.3%	-0.1%	0.15%

○ 수납액은 전년도 558,092,891천원 보다 6,533,920천원이 많은 564,626,811천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57,237천원 보다 853,557천원이 증가한 910,794천원이다.

※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모두 증가하였음.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59,779,105	566,998,790	564,626,811	910,795	1,461,184
100 지방세수입	24,303,947	27,148,035	26,121,250	540,218	486,566
110 지방세	24,303,947	27,148,035	26,121,250	540,218	486,566
111 보통세	24,147,947	26,527,963	25,978,910	257,099	291,955
111-03 주민세	437,070	498,535	489,085	1,669	7,782
111-04 재산세	3,937,010	4,183,313	4,110,042	5,821	67,449
111-05 자동차세	6,940,000	8,172,888	8,018,247	256	154,384
111-07 담배소비세	3,026,387	2,920,420	2,920,420		
111-08 지방소비세	6,909,000	6,822,000	6,822,000		
111-09 지방소득세	2,898,480	3,930,806	3,619,115	249,352	62,339
113 지난년도수입	156,000	620,071	142,340	283,120	194,612
113-01 지난년도수입	156,000	620,071	142,340	283,120	194,612
200 세외수입	11,322,730	16,511,069	15,165,875	370,576	974,617
210 경상적세외수입	5,754,431	7,015,541	6,889,158		126,383
211 재산임대수입	619,424	850,513	754,200		96,313
211-01 국유재산임대료	40,000	52,281	52,281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79,424	798,232	701,919		96,313
212 사용료수입	1,116,416	1,174,005	1,167,307		6,699
212-01 도로사용료	78,165	75,241	74,730		512
212-02 하천사용료	1,800	1,535	1,535		
212-05 시장사용료	5,000	3,860	3,860		
212-07 입장료수입	108,000	178,257	178,257		
212-08 기타사용료	923,451	915,112	908,924		6,187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13 수수료수입	205,610	256,708	256,664		44
213-01 증지수입	136,660	161,076	161,032		44
213-04 기타수수료	68,950	95,632	95,632		
214 사업수입	1,357,408	2,058,388	2,035,366		23,021
214-01 사업장생산수입	3,825	4,491	4,491		
214-06 매각사업수입		397,250	397,250		
214-08 의료사업수입	1,094,000	1,311,874	1,311,712		162
214-09 기타사업수입	259,583	344,773	321,914		22,859
215 징수교부금수입	602,100	564,307	564,307		
215-01 징수교부금수입	602,100	564,307	564,307		
216 이자수입	1,853,473	2,111,620	2,111,314		30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846,185	1,955,304	1,955,304		
216-06 기타이자수입	7,288	156,315	156,010		306
220 임시적세외수입	5,568,299	9,495,528	8,276,717	370,576	848,235
221 재산매각수입	597,237	323,312	323,312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97,237	323,312	323,312		
222 부담금	328,000	341,897	333,031		8,866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	300,000	300,000	300,000		
222-02 일반부담금	28,000	41,897	33,031		8,866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86,113	658,776	481,160	675	176,939
223-01 과징금	44,778	53,814	24,950		28,864
223-02 이행강제금	100,000	182,228	99,971		82,256
223-03 변상금	4,500	62,943	59,955		2,987
223-05 과태료	236,835	359,790	296,283	675	62,831
224 기타수입	4,156,949	6,980,067	6,820,627	32,606	126,834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24-01 불용품매각대	45,915	46,827	46,827		
224-06 그외수입	4,111,034	6,933,239	6,773,799	32,606	126,834
225 지난연도수입	100,000	1,191,475	318,585	337,294	535,594
225-01 지난연도수입	100,000	1,191,475	318,585	337,294	535,594
300 지방교부세	167,139,200	167,558,356	167,558,356		
310 지방교부세	167,139,200	167,558,356	167,558,356		
311 지방교부세	167,139,200	167,558,356	167,558,356		
311-01 보통교부세	149,733,200	149,733,200	149,733,200		
311-02 특별교부세	1,692,000	2,166,000	2,166,000		
311-03 부동산교부세	15,639,000	15,584,156	15,584,156		
311-04 소방안전교부세	75,000	75,000	75,000		
400 조정교부금등	25,177,838	25,897,838	25,897,838		
420 시 · 군조정교부금등	25,177,838	25,897,838	25,897,838		
421 시 · 군조정교부금등	25,177,838	25,897,838	25,897,838		
421-01 시 · 군일반조정교부금	22,727,838	22,727,838	22,727,838		
421-02 시 · 군특별조정교부금	2,450,000	3,170,000	3,170,000		
500 보조금	207,585,991	207,216,106	207,216,106		
510 국고보조금등	159,218,086	158,776,557	158,776,557		
511 국고보조금등	159,218,086	158,776,557	158,776,557		
511-01 국고보조금	122,774,899	122,094,284	122,094,284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261,437	20,228,819	20,228,819		
511-03 기금	16,181,750	16,453,455	16,453,455		
520 시 · 도비보조금등	48,367,905	48,439,549	48,439,549		
521 시 · 도비보조금등	48,367,905	48,439,549	48,439,549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521-01 시 · 도비보조금등	48,367,905	48,439,549	48,439,54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981,741	122,667,385	122,667,385		
710 보전수입등	37,450,795	108,124,535	108,124,535		
711 잉여금	31,514,420				
711-01 순세계잉여금	31,514,420				
712 전년도이월금	5,936,375	108,124,535	108,124,535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478,122				
712-02 시 ·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458,253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108,124,535	108,124,535		
720 내부거래	14,530,946	14,542,850	14,542,850		
721 전입금	14,530,946	14,542,850	14,542,85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8,162	8,162	8,162		
721-04 기금전입금	14,400,000	14,400,000	14,400,000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2,784	134,688	134,688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의 약 261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51억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67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9억원, 보조금은 2,072억원이 수납되었다.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약 46%(131억원)가 증가하여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세입의 비중이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비율이 높음으로 자체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세출예산 개요(사고 · 명시이월 · 계속비 포함)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20년	487,511,447,000	559,779,104,590	464,046,242,361	77,431,847,380	18,301,014,849
2019년	453,095,996,000	547,662,710,460	449,968,356,289	72,267,657,590	25,426,696,581
증감액	34,415,451,000	12,116,394,130	14,077,886,072	5,164,189,790	-7,125,681,732

○ 예산액은 487,511,447,000원에 전년도에서 72,267,657,590원의 이월금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59,779,104,590원이다.

○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34,415,451,000원, 예산현액은 12,116,394,13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과 이월액 역시 각각 14,077,886,072원, 5,164,189,790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7,125,681,732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9%에 해당하는 464,046,242,361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40억원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77,431,847,380원으로 전년대비 51억원, 불용액은 71억원이 감소하였다.

※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이 82.9%로 지난해 82.2%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이 13.8%로 지난해 13.1%보다 증가하였으나, 불용비율은 3.2%로 지난해 4.6%에 비해 감소하여 전년대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59,779,105	464,046,242	40,354,549	4,123,782	32,953,516	18,301,015
일반공공행정	32,695,356	28,395,537	3,267,988			1,031,832
공공질서 및 안전	17,819,282	9,238,607	7,107,807	215,085		1,257,783
교육	5,303,040	3,934,086	1,050,200			318,753
문화 및 관광	51,325,592	33,010,452	3,687,201	95,233	11,663,979	2,868,728
환경보호	41,553,737	38,534,657	1,018,078		1,441,802	559,200
사회복지	118,546,245	110,794,806	1,681,040	17,843	1,733,970	4,318,588
보건	9,026,054	8,632,962	95,714			297,378
농림해양수산	131,923,647	103,024,859	11,318,638		14,478,921	3,101,229
산업 · 중소기업	26,547,051	24,834,074	806,270	130,150		776,556
수송 및 교통	28,994,128	20,653,711	2,018,758	2,279,352	3,570,340	471,967
국토 및 지역개발	39,284,081	29,101,519	8,302,856	1,386,119	64,505	429,081
예비비	347,698					347,698
기타	56,413,194	53,890,972				2,522,222

*불용액 : 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1,107억원, 농림해양수산 1,030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분야로 205억원**이 증가하였고,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전년대비 **180.7%**가 증가하였다.

○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97건 403억원이며 **명시이월 중 10억 이상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남변~평리, 남해성당~아름다운교회)(32억),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28억),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22억),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14억), 아산 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11억) 등 총 5개 사업이다.

○ 사고이월은 16건 41억원이다. **사고이월 중 5억 이상 사업은** 금천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12억),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8억),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5억) 등 총 3개 사업이다

○ **계속비 이월은** 37건 329억원이다. **15억원 이상 사업은**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44억), 어촌뉴딜 300사업(42억), 어촌뉴딜사업-설리지구(45억), 해양낚시공원 조성(27억), 남해 생활SOC꿈나눔센터 건립(27억), 관광지 주차장 및 기타시설 조성(23억), 수리시설 개·보수(18억),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16억) 총 8개 사업이다.

○ 불용액은 예산액의 3.2%에 해당되는 183억원이며 4억원 이상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꿈나눔센터)(4억), 지역수요 맞춤 문화 지원(4억)이며,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도 불용액 254억원 보다 약 28% 감소하였다.

※ 명시이월의 경우, 공기부족, 대상지 변경, 설계용역 변경 및 협의 지원, 사업계획변경,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 한 것으로 추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며, 사고이월의 경우, 보상협의 지원, 행정절차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464,046,242,361	464,046,242,361	0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Ⅳ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개요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년	115,077,659,280	116,027,620,352	115,943,294,152	511,510	83,814,690
2019년	115,388,204,290	115,296,048,855	115,185,823,735	0	109,225,120
증감액	-310,545,010	731,571,497	757,470,417	511,510	-25,410,430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15,077,659,280	116,027,620,352	115,943,294,152	511,510	83,814,690
기타특별회계	115,077,659,280	116,027,620,352	115,943,294,152	511,510	83,814,690
상수도	24,004,217,100	24,689,517,218	24,652,628,128	511,510	36,377,580
의료급여기금	775,240,000	786,946,154	786,946,15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859,522,000	882,026,020	882,026,0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57,547,000	764,430,628	764,430,628		
환경기초시설	33,310,018,180	33,445,898,303	33,398,461,193		47,437,110
청사건립	55,371,115,000	55,458,802,029	55,458,802,029		

○ 세입결산 개요를 살펴보면, 남해군은 6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949,961천원 높게 결정되었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보다 84,326천원이 적게 수납되었다. 미수납액은 83,814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47,437천원, 상수도특별회계 36,377천원이다.

○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310,545천원, 미수납액은 25,41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731,571천원, 수납액은 757,470천원 증가하였다.

○ 세입내역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용료 2,878,736천원, 분담금 수입 120,484천원 등이 순수한 세외수입원이며 그 외 대부분의 세입내역은 보조금이다.

※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15,943,294,152	115,943,294,152	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2 세출결산 개요(사고 · 명시이월 포함)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2020년	106,281,038,000	115,077,659,280	105,053,646,030	6,219,474,330	3,804,538,920
2019년	101,356,842,000	115,388,204,290	51,988,636,448	8,796,621,280	54,491,205,902
증감액	4,924,196,000	-310,545,010	53,065,009,582	-2,577,146,950	-50,686,666,982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06,281,038,000	115,077,659,280	105,053,646,030	6,219,474,330	3,804,538,920
기타특별회계	106,281,038,000	115,077,659,280	105,053,646,030	6,219,474,330	3,804,538,920
상수도	20,779,952,000	24,004,217,100	22,255,683,190	1,372,714,220	375,819,690
의료급여기금	775,240,000	775,240,000	719,695,190		55,544,81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859,522,000	859,522,000	41,431,000		818,091,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42,831,000	757,547,000	373,024,250	65,409,000	319,113,750
환경기초시설	27,852,378,000	33,310,018,180	27,896,207,250	4,781,351,110	632,459,820
청사건립	55,371,115,000	55,371,115,000	53,767,605,150		1,603,509,850

○ 세출결산 개요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06,281,03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796,62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077,659천원이다.

○ 지난해 대비 예산액 4,924,196천원, 지출액 53,065,00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310,545천원, 이월액 2,577,146천원, 집행잔액 50,686,666천원이 감소하였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3%에 해당하는 105,053,646천원이며 이월액은 5.4%인 6,219,474천원이고 불용액은 3.3%인 3,804,538천원이다.

○ **명시이월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 5건 1,372,714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건 65,409천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6건 899,437천원이다.

○ **계속비이월**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1건 3,881,913천원이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5,053,646,030	105,053,646,030	0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Ⅴ 기 금 결 산

1 기 금 결 산

기금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출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계	25,445,162	58,974,075	9,364,005	2,165,250	292,028	47,152,792	22,543,074	61,876,163
재정안정화기금	16,000,197	138,067			138,067		16,138,264	
중소기업육성기금	1,756,743	131,612	100,000		31,612		25,994	1,862,361
재난관리기금	722,467	4,275,280	2,105,741	2,155,530	14,009		4,054,960	942,787
양성평등기금	1,031,812	18,633			18,633		14,000	1,036,445
식품진흥기금	41,674	17,529		9,720	632	7,177	19,216	39,987
마늘명품화기금	5,892,269	73,867			73,867		72,993	5,893,143
옥외광고발전기금		20,000	20,000					2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3,814,533	3,800,000		14,533		617,647	3,196,88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484,554	3,338,264		675	47,145,615	1,600,000	48,884,554

*기타수입 :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타수입에 예수금 47,145,615천원 포함

○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9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25,445,162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8,974,075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22,543,074천원을 공제한 61,876,163천원이다.

○ 기금 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과 보조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기금 보관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Ⅵ 재무제표의 결산

1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178,448	2,131,305	47,143	2.21
Ⅰ. 유 동 자 산	176,613	202,156	-25,543	-12.64
Ⅱ. 투 자 자 산	2,138	2,266	-128	-5.65
Ⅲ. 일반유형자산	91,424	78,702	12,722	16.16
Ⅳ. 주민편의시설	353,623	332,708	20,915	6.29
Ⅴ. 사회기반시설	1,553,571	1,514,409	39,162	2.59
Ⅵ 기타비유동자산	1,079	1,064	15	1.41
부 채	11,273	11,754	-481	-4.09
Ⅰ. 유 동 부 채	5,509	5,353	156	2.91
Ⅱ. 장기차입부채				
Ⅲ. 기타비유동부채	5,764	6,401	-637	-9.95
순 자 산	2,167,175	2,119,550	47,625	2.25
Ⅰ. 고정순자산	1,999,509	1,926,561	72,948	3.79
Ⅱ. 특정순자산	14,710	25,509	-10,799	-42.33
Ⅲ. 일반순자산	152,955	167,480	-14,525	-8.67

○ 2020회계연도 말 남해군 자산은 2조 1,784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 1,313억원보다 471억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12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671억원이다.

○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이 1,766억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2조 18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에 비해 자산이 471억원이 증가한 것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기인한다.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55억원이며 기타비유동부채가 57억원이다.
부채가 전년대비 4.8억 감소한 요인은 퇴직금충당부채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19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99,930	97,886	2,044	2.09
가.	사업총원가	327,060	278,380	48,680	17.49
나.	사업수익	227,130	180,494	46,636	25.84
Ⅱ.	관리운영비	56,271	56,168	103	0.18
Ⅲ.	비배분비용	25,201	22,469	2,732	12.16
Ⅳ.	비배분수익	10,055	9,373	682	7.2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71,346	167,150	4,196	2.51
Ⅵ.	일반수익	222,612	242,295	-19,683	-8.12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51,266	-75,145	23,879	31.78

○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0회계연도 남해군의 사업순원가는 999억원, 관리운영비(562억원), 비배분비용(252억원)에 비배분수익(100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713억원이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226억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12억원이다.

(비용에서 수익을 뺀 결과로, 재정운영결과는 512억원 흑자로 볼 수 있다.)

○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459억원(9.99%)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 4,135억원(89.93%)으로 정부 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익의 총계는 4,597억원이며 자체조달수익이 45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억원 증가한 것은 지방세 세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4,13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6억원이 증가했다

○ 비용은 4,08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선비, 위탁대행사업비, 민간보조금 등의 증가가 원인이다. 재정운영 결과 512억원의 흑자는 지방교부세 수익 및 국고보조금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Ⅶ 성과보고서

(단위 : 개, %)

구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B)	달성(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18	94	248	40	126	82	67
기획예산담당관	1	2	6	2	4	0	100
행정과	1	2	5	0	4	1	80
민원봉사과	1	4	10	2	8	0	100
주민복지과	1	7	23	4	10	9	61
청년혁신과	1	8	30	3	16	11	63
재무과	1	3	9	2	4	3	67
문화관광과	1	5	21	1	10	10	52
지역활성과	1	8	11	4	2	5	55
해양수산과	1	5	13	3	8	2	85
체육진흥과	1	4	8	0	4	4	50
재난안전과	1	5	17	0	12	5	71
도시건축과	1	5	14	3	5	6	57
건설교통과	1	5	12	0	6	6	50
환경녹지과	1	6	19	7	8	4	79
상하수도과	1	3	5	0	5	0	100
보건소	1	6	11	1	6	4	64
농업기술센터	1	15	32	6	14	12	63
의회사무과	1	1	2	2	0	0	100

❍ 남해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비전-정책사업목표(18개)-정책사업목표(94개)-단위사업(228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9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여 평균 67%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4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체육진흥과는 전국대회 개최 및 대회입상실적 성과가 미비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달성률이 낮았으며, 건설교통과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부문에서 성과가 미비하여 다른 성과지표의 달성성과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성과지표 달성률이 50%로 나타났다.

Ⅶ 결산서 첨부서류 검사

1 채 권 결 산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계	2,581,027	42,504	190,768	2,432,763
		원금	2,426,793	41,404	189,715	2,278,482
		이자	154,234	1,099	1,052	154,281
일반회계		계	2,242,091	32,685	150,560	2,124,216
		원금	2,242,091	32,685	150,560	2,124,216
		이자	0	0		0
	공무원학자 대여금	계	2,063,123	0	150,560	1,912,563
		원금	2,063,123	0	150,560	1,912,563
		이자	0	0	0	0
	회원권	계	139,200	0	0	139,200
		원금	139,200	0	0	139,200
		이자	0	0	0	0
	주택융자	계	39,767	32,685	0	72,452
		원금	39,767	32,685	0	72,452
		이자	0	0	0	0
특별회계		계	338,935	9,819	40,207	308,547
		원금	184,701	8,720	39,155	154,266
		이자	154,234	1,099	1,052	154,281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계	104,201	9,819	39,807	74,213
		원금	102,401	8,720	38,755	72,366
		이자	1,800	1,099	1,052	1,847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계	234,734	0	400	234,334
		원금	82,300	0	400	81,900
		이자	152,434	0	0	152,434

○ 2020회계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581,027천원에서 당해연도 42,504천원이 발생하고 190,768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2,432,763천원이다.

○ 이는 전년대비 148,264천원 감소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채권의 현재액과 채권 대장의 금액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채 무 결 산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 전년도와 동일하게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0원으로 확인되었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가.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644,768,520	112,731,842	3,556,847	753,943,515
행정재산	계	608,969,466	100,345,540	824,867	708,490,139
	공용재산	441,598,219	56,613,750	622,114	223,277,695
	공공용재산	167,286,059	43,717,394	199,566	485,116,047
	기업용재산	13,256	0	3,185	10,070
	보존용재산	71,932	14,395		86,327
일반재산		35,799,054	12,386,302	2,731,980	45,453,375

○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5,116,501㎡, 231,934,755천원이며 건물 304,571㎡, 153,493,765천원이며 기타 50,536건, 368,514,995천원으로 총 753,943,515천원이다.

○ 전년도말 대비 109,174,99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은 공작물 매입으로 82,752,20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942	215	188	969
금 액	8,427,875	1,800,271	1,542,221	8,685,925

○ 2020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942개 8,427,874천원 취득 등 취득액 1,800,271천원, 매각·폐기 등 처분액 1,542,221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9개, 8,685,925천원으로 확인하였다.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단위 : 천원)

구분	전용내역			이체내역		
	건수	감액	증액	건수	감액	증액
합계	10	223,894	223,894	240	18,740,854	18,740,854
일반회계	10	223,894	223,894	240	18,740,854	18,740,854
특별회계	0	0	0	0	0	0

○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액은 10건 223,894천원이며 전용 예산 간 상호 증감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예산이체는 240건 18,740,854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중 부서개편으로 인해 시행한 것으로, 이체 예산 간 상호 증감액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예비비사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650,234	5,302,545	4,932,493	66,154	303,897
일반회계	5,650,234	5,302,545	4,932,493	66,154	303,897
특별회계	0	0	0	0	0

○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복구지원(하천) 사업 외 53건 5,302,54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932,493천원을 지출하고 66,154천원을 이월하고 303,897,35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0원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Ⅸ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구분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금고보관액 (가-나)
합 계	680,570,105,299	569,099,888,391	114,470,216,908
일반회계	564,626,811,147	464,046,242,361	100,580,568,786
기타특별회계	115,943,294,152	105,053,646,030	10,889,648,122
상수도	24,652,628,128	22,255,683,190	2,396,944,938
의료급여기금	786,946,154	719,695,190	67,250,96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882,026,020	41,431,000	840,595,0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64,430,628	373,024,250	391,406,378
환경기초시설	33,398,461,193	27,896,207,250	5,502,253,943
청사건립	55,458,802,029	53,767,605,150	1,691,196,879

❍ 2020회계연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보유잔액) 일반회계100,580,568,766원, 특별회계(6개) 10,889,648,122원, 기금(9개) 61,876,163,299원으로, 결산상의 예금내용과 금고 기록은 일치하였음을 확인함.

Ⅹ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분야

가.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 실시(모범사례)

○ 지목변경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취득세 772건, 1,471,596천원을 신고·납부토록 함

○ 취득세는 신고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앞서 신고 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하여 취득세 과세누락 방지 및 부주의로 인한 가산세 부담 경감으로 취득세 징수율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기여함

지목변경 및 사용승인 취득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취득 원인	건 수	납부세액	시행 시기	비 고
	합 계	772	1,471,596		
1	지목변경	544	167,376	기존 시행	
2	건축물 사용승인	228	1,304,220	2020년 7월부터	

나.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미수납액	사유별					비고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기타	
합계		1,544,998	57,636	15,457	1,072,028	7,088	392,789	
일반 회계	계	1,461,183	57,636	15,457	988,213	7,088	392,789	
	지방세	486,566	57,299	1,528	48,550	6,243	372,946	
	세외수입	974,617	337	13,929	939,663	845	19,843	
특별회계	세외수입	83,815			83,815			

❍ 지적사항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여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 납세태만이 69.4%를 차지하고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
- 자동차세는 차량초과말소 및 사실상 폐차,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운행하는 대포차 등의 주원인으로 체납 증가추세로 국세보다 채권확보 시기가 늦어 지방소득세 체납이 증가되고, 상속재산 미신고분의 직권부과 후 미납부에 따른 취득세 체납이 증가되고 있음
-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608백만원(62%)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수익 감소에 따라 독일문화체험센터 기념품 판매점, 작은 영화관 등 행정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아 체납이 증가됨

❍ 개선 권고사항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한 경우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함

다. 세입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합 계	49,969,212	459,086	47,512,907	910,795	
지방세	27,148,035	294,524	26,121,250	540,219	
세외수입	22,821,177	164,562	21,391,657	370,576	

※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 : 57,237천원

❍ 지적사항

- 지방세 결손처리 사유로는 전체 604건/910,795천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629백만원, 평가액부족 224백만원, 배분금액부족 55백만원, 시효소멸 2백만원 등의 사유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리 하였으며, 2019회계연도에 비해 불납결손금액이 크게 증가함

❍ 개선 권고사항

- 불납결손 후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 후 재산압류 속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권고함

라. 주요관광지 입장료 수입 예산 과다 편성

❍ 현 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세입예산액	실제입장료수입	입장객	입장료	비고
합 계	233,000	87,985	133,661명		
파독전시관	160,000	70,635	101,897명	1,000원/무료	직영
이순신영상관	65,000	12,001	11,440명	별표	직영
노량 거북선	8,000	5,349	20,324명	500원/무료	직영

❍ 개선 권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관광지 관광객 및 입장료가 감소하여 세입예산 편성액 233,000천원 대비 실제 입장료 수입은 87,985천원으로 145,015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세입액이 누락되었으므로 전년도 수입액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반영하기 바람

마.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에 대한 부과 징수 대책 마련

❍ 현 황

(단위 : 천원)

하수도 사용료 부과 현황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현황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12,667	18,167	5,448	5,453

❍ 개선 권고사항

- 계량기를 군에서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검침원의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제 수입액 대비 적자가 발생하여 징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광역상수도 급수가구에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중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지역도 광역 상수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기준을 마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바. 도로 점·사용료 미수납액 관리 철저

❍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미수납액	비고
78,165	75,242	74,605	637	

- 징수결정액 75,242천원 중 74,605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637천원이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0.85%임

❍ 개선 권고사항

- 점·사용료 미수납액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권고함

사. 재원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경주 필요

❍ 군 재정의 일반현황

- 군 재정의 일반적인 지표로서 2020회계연도 기준 총세입 680,570백만원, 총세출 569,099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11,470백만원 규모
- 2020년도 세입액은 680,57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290백만원(1.08%)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비중을 보면 각종 보조금이(32.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1.9%), 지방교부세(24.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4%), 지방세(3.8%), 세외수입(3.1%)으로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을 각각 7.8%와 61.2%로서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의 확충은 근거법령의 개정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존재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탈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자체수입액 47,534백만원(전체 세입액 680,570백만원의 7.0%에 불과함) 중 지방세 26,121백만원(55.0%), 세외수입 21,413백만원(45.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납액 누적에 따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 체납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한정된 세입 재원의 활용도를 낮추고 있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방세	세외수입
합계	486,566	974,617
현년도	291,955	439,022
과년도	194,611	535,595

❍ **문제점**

- 지방세는 과세근거가 분명하고 납세자의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체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다소 높은데 반하여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근거가 개별법령에 의하고 과태료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체납 후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 **개선 권고사항**

-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체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반 상설운영을 위한 조직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당해연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무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세입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세입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인센티브 부여 등 부과대비 징수율 체고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특히, 전체사업비에 대한 의존수입 비중이 높은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의존수입의 비중이 큰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위하여 실시간 지표관리를 통하여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함
- 군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대단히 복잡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배분기준의 중요한 항목인 재정수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노력 반영항목의 산정기준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세 체납액 감소, 지방세 세원 발굴 등 지표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평소 실시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세출분야

가. 공설해수욕장 민간위탁금 사후관리 소홀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여 해수욕장의 시설관리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의 번영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해수욕장 6개소를 개장기간 동안 관리

- 위탁 관리 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입장료, 이용료 등 수탁재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번영회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 수선유지비 등은 경비로 산정하여 위탁금을 산출하도록 규정

❍ 지적사항

- ‘2020년 남해군 해수욕장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6조(운영 및 비용부담 등) 제3항에 따르면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재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는 반면 상수도 요금, 화장실 오수 수거비용 등 공공요금은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는 실정임

- 2020년도 해수욕장 위탁관리에 따른 수입금 발생분에 대한 정산도 없이 주차관리 인건비, 환경정비 인건비 289백만원 상당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공설해수욕장의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샤워장, 파라솔 이용료, 야영장 등을 수탁관리 주체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정한 민간위탁금의 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을 권고함

나.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및 절차 부적정

❍ 현 황

- 군은 매년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집행하였음

202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466,087	438,433	27,654	
시책업무추진비	187,706	171,599	16,1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2,130	147,528	4,6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105	24,977	4,12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7,146	94,329	2,817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집행시기와 기준, 집행방법 등에 대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집행에 있어서는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사전 품의 후에 원인행위인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지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사항

- 일부 부서에서는 연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여 사전 집행품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카드 결제 후에 집행품의를 거치는 등 회계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 일부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등으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시책업무 추진비로 집행한 사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직원 외의 사람에 대한 격려 사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직무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음

❍ 개선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겠으며,
- 각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명확히 하여 사전 품의를 득한 후 집행하는 회계 절차를 준수해 나가고 각 업무추진비별 집행성격과 가액한도를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함

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 보조금 반환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보조금반환금액	전년대비증감		비고
		금 액	증 가 율	
2017	2,841	△724	△20.3	
2018	4,329	1,488	52,4	
2019	4,367	38	0.9	
2020	4,612	245	5.6	

❍ 지적사항

-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나 보조금 반환액 또한 증가하여 2020회계연도 반환액은 4,612백만원으로 예산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함
-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도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매칭 사업비 비율을 설정하는데 일선 지자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실로서는 어려운 실정임

❍ 개선 권고사항

-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에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환액을 최소화하기 바람

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 가	지 출	
계	840,166	△193,398	13,200,396	13,393,794	646,768
보증금	62,469	△22,234	207,849	230,083	40,235
보관금	618,185	△83,801	12,855,252	12,939,053	534,384
잡종금등기타	159,512	△87,363	137,295	224,658	72,149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보관금·잡종금 등으로 구분 하도록 되어있고, 필요시 위 현금에 대해 세목을 각각 설정 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르면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은 법률로써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 경과 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

❍ 개선 권고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을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반환청구 및 세입 조치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함

3 예산분야

가. 예산 편성 후 집행률 저조

❍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고
계	107건		675,082	0	675,082	
주민복지과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지원	시설비	600	0	600	
〃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900	0	2,900	
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	3,200	0	3,200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남해 쌀 교육 및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5,130	0	5,130	
※ 이하생략, 부서제출자료 참고						

❍ 지적사항

- 일반회계 세출예산 107건 675,082천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함

-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 변경·승인 처리하여야 하나 절차 미이행
-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예산 삭감 조치가 필요

❍ **개선 권고사항**

- 당초예산 편성 이후 사업여건 변화, 집행사유 변동, 사업추진 불가 사유 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예산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는 등 사용하지 못하는 재원을 타 사업에 활용하여 관리하여 재정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나. 예비비 지출결정 부적정 및 집행 철저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5,650,243	5,302,545	4,932,494	66,154	303,897
일반예비비	1,071,241	1,006,543	976,671		29,87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296,002	4,296,002	3,955,823	66,154	274,025
내부유보금	283,000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

❍ **지적사항**

- 물미 해안도로 오수처리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55백만원 : 문화관광과), 어업지도선 해상사고로 인한 수리비 (57벡만원 : 해양수산과), 서상~남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767백만원 : 건설교통과),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예산 소진(37백만원 : 환경녹지과), 벼멸구 긴급방제지원(35백만원 : 농업기술센터)등은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하는 예비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재난안전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경우 26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또한 해양수산과의 태풍피해복구지원(어항시설) 및 해양쓰레기피해복구지원사업 66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개선 권고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여 관리하되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을 개선되어야 함
-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시기 바람

다. 합리적인 이월사업비 관리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계	213건				44,479		
주민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823	41	31	792	시설규모 증가로 건축설계 확정 지연	명시이월
재난안전과	정거소하천정비	3,626	3,577	2,770	289	준공기한미도래	사고이월
지역활성과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2,852	2,405	2,275	130	사업승인지연	사고이월
※ 이하 생략. 부서 제출자료 참고							

- 일반회계 기준 명시이월은 197건/40,355백만원, 사고이월은 16건/ 4,124백만원에 달함

❍ 지적사항

- 세출예산 중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용역 등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연내 준공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함이 판단됨에도 사고이월 조치함으로서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이 발생함
-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사업은 준공기한이 2023.12.31.인데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이월함

❍ 개선 권고사항

- 관련법규를 깊이 있게 연찬하여 금후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또는 회계연도 내에 마치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여러 햇수가 걸리는 장기공사는 계속비로 계상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이월 목적에 맞게 편성하기 바람
- 한정된 재정의 합리적인 운용과 가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서는 보다 체계적인 세출예산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서는 삭감조치하고 필요시 재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이월사업비 관리가 필요함

3 기타분야

가. 각종 공모사업 선정 성과 거양(모범사례)

❍ 2020년 각종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신청으로 총 25건 62,446백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주요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2020년도 공모사업 선정 성과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공모사업명	신청일	선정일	예산액	사업개요
	합계				62,446	
1	기획예산 담당관	일반 농산어촌개발산업	2020.2.28.	2020.6.10.	9,031	○어촌종합개발(석교권역) ○어울림마을조성(문항지구)
2	재무과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020.4.20.	2020.9.23.	4,571	○삼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 (총규모 지하1・지상2층, 주차장)
※ 이하 생략						

나. 교통사고예방 사업 투자 증대로 교통안전에 기여(모범사례)

❍ 군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인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개소 1,038백만원을 투자하여 보행자 도로 확대 및 위험도로 개선, 안전표지와 도로 부속물 설치·관리, 위험물 제거 사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교통사고예방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합계		1,038		
1	건설교통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30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선하여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미끄럼방지포장, 교통표지판 설치 등 1식
2	건설교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40	도로 굴곡 등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에 편안함 제공(서면 중현, 서상)	선형개량 및 노견 개선 등
3	건설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68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과속차량 사고에 대해 어린이 보호 (남해, 고현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개소

다. 성과보고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조치 미흡

❍ **현 황**

(단위 : 개)

구분	성과목표						비고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8	94	248	40	126	82	

- 성과관리체계는 공공부문에 경쟁력을 불어넣고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를 높여 남해군의 발전을 견인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함

- 정책사업 지표 248건 중 130%이상 40건, 100%이상 126건, 100%미만 82건이며, 달성률이 0%로 추진실적이 전무한 사업은 동대만 간이역 관리 및 운영, 시금치농기계확대보급사업, 남해읍공영주차장 CCTV설치, 남해읍공영주차장비상벨설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민간자본유치,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료지원사업 등으로 대책 필요

❍ 지적사항

-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측정 산식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목표 설정을 할 때는 과거실적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의 100%~110%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아무런 기준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하거나, 적게 목표를 설정한 사례가 많음

❍ 개선 권고사항

- 성과지표는 목표달성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낮게 잡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또한 각 부서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권고

라. 주요사업 적극 추진 필요

❍ 현 황

(단위:백만원)

합계		진도율					
		100%		50 %이상		50% 미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	388,233	9	64,931	13	124,145	19	199,147

❍ 지적사항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시설사업 20억 이상, 용역 3억 이상 사업으로 다년간에 걸쳐 공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된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이동면・서면・고현면)과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인 남해읍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은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권고사항

- 주요사업은 남해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편익증진과 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정밀하게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은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바람

마.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미 징수

❍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의 규정에 의한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 하여야 함에도,

❍ 아래 내용과 같이 군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았음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토록 조치하기 바람

<변상금 미 징수 현황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점유자	비고
면	리					
설천면	문항리	168	답	318㎡	정재옥	부과누락

바.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현 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제4조(공유재산)와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재산 및 물품을 관리토록 하고 변동 시에도 그 변동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12.31.기준 군유재산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재산가액	토 지			건 물		
		필지	면적	가격	동	면적	가격
합 계	385,426	27,820	15,116,501	231,934	511	304,570	153,492
행정재산	371,782	26,429	14,424,348	218,950	499	300,421	152,832
일반재산	13,644	1,391	692,153	12,984	12	4,149	660

<2020.12.31. 기준 정수물품 현황>

공용차량					정수물품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종류	물품수	가액
175	72	10	62	31	31종	985점	9,024백만원

❍ 문제점

- 중요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총괄재산관리관(행정복지국장), 분임재산관리관(재무과장), 부서재산관리관(부서장), 예산부서(기획예산담당관)가 서로 달라 재산을 취득하는데 따른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협조 등 재산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함
- 다음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 시행 부서의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실정임
-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정수 배정에 따른 물품을 수급·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공유재산의 일제 조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권 확보
- 무단점유자 조치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관리전환이 필요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원으로 활용하기 바람
- 또한 연도 중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예산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정수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으로 물품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주요 물품의 수량과 현 보유가 일치하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재물조사 외에 상시 실사가 필요함
- 군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등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광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관련 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물의 관리가 요구 됨

사. 소방청사 정비에 따른 군비부담 부적정

❍ **현 황**

- 현재 소방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소방, 구조인력 등의 조직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0.4.1.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인력 및 재정관리 새로운 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임
- 소방청에서는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독립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소방회계법)**을 2019.12.10. 제정하여 2021.1.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관내에는 남해소방서를 비롯한 지역대, 안전센터 등 6개소에 소방인력이 배치되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문제점**

- 2020년도 군 예산으로 미조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106백만원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의 예산으로 추진 중으로써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내 소방청사(남해소방서 및 각급 지역대, 안전센터 등) 6개소 중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시설비는 도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 부지 4개소에 대하여는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관리되고 있어 사후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회계법에 따라 시·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의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소방청사 정비에 따른 예산을 반드시 도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경남도에 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청사정비 중기계획 수립 건의 등을 통하여 하며, 군의 사무경비지원 및 일방적인 부지 확보 조건부 지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 한편,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도의 재정확보 근거마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관내에 소재한 소방청사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일제조사와 함께 부지 소유권과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데에 따른 재산권 이관 또는 확보 노력이 필요함

아.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현 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당해연도까지 조성누계	당해연도 집행액	집행비율	당해연도말 조성액	존속기간	법정의무 기금여부
계	84,419	22,543	26.7	61,876		
재정안정화기금	16,138	16,138	100	0	~ 2020	X
중소기업육성기금	1,888	26	1.4	1,862	2011 ~ 2022	X
재난관리기금	4,998	4,055	81.1	943	1988 ~ 계속	○ (재난안전법 제68조)
양성평등기금	1,050	14	1.3	1,036	2017 ~ 2021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식품진흥기금	59	19	32.2	40	2001 ~ 계속	○ (식품위생법 제89조)
마늘명품화기금	5,966	73	1.2	5,893	2009~2024	X
옥외발전기금	20	0	0	20	2016 ~ 계속	○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815	618	16.2	3,197	2019 ~ 계속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485	1,600	3.2	48,885	2020 ~ 2025	X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10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여타기금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 기금의 조성취지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금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기금은 5%미만의 사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성격이 유사한 다른 기금에 통합·운영하는 등 효율성을 강구하기 바람

5 정책 개선 및 권고사항

가. 체계적인 군 청사정비(신축) 추진

❍ 현 황

- 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단계별·체계적 추진을 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및 건물(지장물)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편입부지 보상협의 추진현황

구 분	토 지	주택(지장물)	영업장	세입자
협의대상	64 필지	48 건	35 건	19 명
협의완료	37 필지	28 건	13 건	8 명
협의실적	56.4%	63.6%	37%	42%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추진,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군 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음

- 정비계획은 대지면적 18,250㎡이며 건축면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 기준면적 9,891㎡(군청사:8,385㎡ 의회청사:1,506㎡)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할 계획임

- 소요예산은 보상비 포함 700억원 규모이며 재원확충을 위하여 2002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결산검사 기준일 현재 **5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임

❍ 문제점

- 편입토지 및 건물(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설계와 착공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의 실현시기를 더욱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됨

-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그간 575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을 확충한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겠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너무 많은 행정력 낭비초래와 군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켰으며 총 사업비 대비 125억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군의 재정여건을 더욱 압박하게 됨

- 청사신축 정비계획 추진 시 편입토지 보상협의,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수립, 사업 착공까지 단계적 절차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청사정비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는 한정된 군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청사정비 추진계획에 반영된 편입토지 및 건물(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편입부지 대상 소유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의 및 설득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으며
-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단계별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보상협의 설득 및 기간 단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편입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의 대상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사업 시행 시 부족재원 **125억원** 확보대책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는 군의 재정을 투입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의 추진이나 지방채 발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타사업의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이를 완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제회의 시·군 청사 정비 융자금**(군청사 정비시 100억원, 2년거치 10년 이내 균분상환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청사정비 설계 및 시공 시 행정안정부의 시·군구 청사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주차 공간 확보 검토 필요
- 또한 2020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해 평생학습관 증축사업(군비 부담: 2,000백만원)',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군비 부담:3,300백만원)' 의 소요사업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 외 군비 부담분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융자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재원충당 계획의 사전 검토가 필요함

나.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방안 강구

❍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교차로명	위 치	도로등급	시행청	설치연도	비고
남변	남해읍 남변	국도	남해군	2015	
연죽	서면 대정	군도	남해군	2017	
남산	남해읍 남산	도시계획도로	남해군	2018	
시문	삼동면 영지	지방도	남해군	2019	
단항	창선면 단항	국도	국토부	2019	
도마	고현면 도마	국도	국토부	2020	
남해	남해읍 차산	국도	국토부	2020	

- 현재 군내 7개소의 교차로가 설치되어 교통시간 단축 및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에 기여함

❍ 개선 권고사항

- 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남해읍 마산, 남면 양지삼거리, 삼동 지족, 미조 초전 등 추가 설치가 필요지역 조사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다. 전원마을 부지 미분양 필지에 대한 분양 촉구

❍ 현 황

구 분	조성내역	분양	미분양	분양단가(평균)
문항마을	총21동 (주택용지 20동, 공공용지 1동)	10동	10동	848,000원/3.3㎡
화계마을	총29동 (주택용지 26동, 근린생활 3동)	10동	16동	704,000원/3.3㎡

❍ 문제점

- 주택용지 간 단차가 적어 일부 필지는 전원마을 주택용지의 조망권(바다 등) 확보가 어려워 선호도가 낮으며 코로나 등의 경기침체로 분양 실적이 저조함
- 조성한지 3년 ~ 7년이 경과하였으나 분양실적 저조로 약 3,435백만원의 재원이 사장되고 있어 세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 및 분양조건 완화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분양 확보에 노력을 기하기 바람

라. 각종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현 황

- 현재 군에서는 각종 시설(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공영주차장 등 사업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주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미조 설리 스카이 워크 시설사업〉

- 스카이 워크 시설을 설치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단순한 시설물로는 탐방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적을 것이므로 부대시설로 **번지 점프대 설치**, **짚라인 설치**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명리조트의 개장을 겨냥한 선제적인 탐방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주차장은 주말, 휴일 등 탐방객이 많이 찾을 경우 동시주차 능력이 부족하므로 시설 입구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계식 주차장 확보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보물섬 승마랜드 사업〉

- 보물섬 승마랜드 사업은 현재 위탁관리(2020년도 위탁관리비 77,000천원)를 하고 있으나 말의 보유두수가 11마리에 불과해 승마체험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보유두수 확보가 필요함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 현재 준공단계인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이 각종 행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인 만큼 체육활동 외에 문화공연 장소는 물론 다수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간이무대 설치와 함께 화장실의 변기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현재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1기, 대변기 1기만 설치)
- 이 외에도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인 사회복지 시설,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상하수도 시설, 공영주차장 등 사업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남해군 시설물 관리공단**(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함

사업장 확인 사진(1)



미조 설리 스카이워크 사업장 점검 현장 사진

사업장 확인 사진(2)



스페이스 미조 사업장 점검 현장 사진

사업장 확인 사진(3)



보물섬 승마랜드 사업장 점검 현장 사진

사업장 확인 사진(4)



창선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사업장 점검 현장 사진

XI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지방세 체납액 감소대책 강구

가. 권고사항

○ 과세 시, 납부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많아 징수율이 저조하며,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부서 간 협력하여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징수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노력 필요

나. 조치결과

○ 2020년 체납액 징수실적 : 383백만원(2019년 대비 징수율 29% 증가)

○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실적

- 부동산압류 79건/798백만원, 예금압류 1,448건/1,486백만원, 자동차압류 419건/100백만원
- 출자금 압류 23명/58백만원
- 차량번호판 영치 실적 : 73건/21백만원
- 체납자 분할 납부 안내문 발송 : 232명/1,539건/521백만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매주 2회) : 부서, 읍면 합동 현장 징수

다. 검토의견

○ 강력한 체납 징수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29%증가하여 징수 실적이 거양됨

2.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대책 강구

가. 권고사항

○ 고액체납자 중 악성체납자가 다수 존재하여 징수율 거양이 어려움

○ 부서별 부진 분야 대책 강구 등 특별대책 추진 요망

나. 조치결과

○ 2020년 체납액 징수실적 : 359백만원(2019년 대비 징수율 7.2%증가)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 3회 실시

○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실적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4명/149백만원
- 체납자 분할 납부 안내문 발송 : 494명/621건/995백만원
- 차량번호판 영치 실적 : 10건/2백만원

다. 검토의견

○ 징수대책 보고회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에 노력

3. 세입결손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촉구

가. 권고사항

○ 불납결손 후 소멸시효 도달 전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재산가치를 따져 실익이 없는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행정력 낭비 방지

나. 조치결과

○ 결손처분 : 403건/986백만원

○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 : 4건/1백만원

다. 검토의견

○ 과감한 결손 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액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기여

4. 세입금 과·오납 반환사례 발생 지양

가. 권고사항

○ 과·오납 반환 사유별 내용을 검토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나. 조치결과

○ 과·오납 반환 사유별 내용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및 전 부서 공문 발송(재무과-26385, 2020.06.17.)

○ 전체 부과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2019년 0.16%에서 2020년 0.13%으로 감소함

다. 검토의견

○ 과·오납 반환 사유별 원인을 분석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환급액 최소화에 노력함

5.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액 정리 철저

가. 권고사항

○ 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내시 변경이 발생하면 추경 시 예산을 정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나 정정하지 않음

○ 사업부서, 세입부서, 예산부서에는 수시확인과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과 수령한 보조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철저

나. 조치결과

○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

다. 검토의견

○ 직원 업무연찬 등을 통해 예산과 보조금 수령액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자 관리 소홀

가. 권고사항

○ 융자금 채권이 15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로 있으며, 원금 전액 상환 후 이자만 있는 경우 이자 상환 의지능력이 전무

○ 회수 가능 채권은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결손처리가 필요한 경우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해 행정력 낭비 최소화

나. 조치결과

○ 융자금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 '20. 6.

○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상환 독촉 고지 : '20. 8.

○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사업 채권관리 법률 자문 : '20. 9.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변제의무 없음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에 상속인이 없을 경우 결손 처리 가능

다. 검토의견

○ 채권 회수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하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지방보조금 집행 사후 자료 관리 및 정산 검사 소홀

가. 권고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정산까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서 담당자의 이해도가 낮으므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정산 검사를 위해 표준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함

나. 조치결과

○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 실무교육 실시

- 일자 : 2020. 8. 12.
- 강사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 참석대상자 : 90명(부서 예산담당자, 보조금담당자, 경력 2년 이하 직원 등)

다. 검토의견

○ 신규 직원 및 보조금 사업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연찬에 노력하였음

8.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

가. 권고사항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라 5년이 경과 하여도 환불 청구가 없는 보관금에 대하여 남해군에 귀속 조치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농축산과 83건, 105백만원 세입조치 완료 : ‘20. 9

다. 검토의견

○ 지적 이후 경과된 보관금에 대해 세입조치 완료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함

9. 보조금이 지급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가. 권고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동산 취득 및 대수선 등 보조금이 지급된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문화관광과)** 남해 부소암 대웅전 개축공사 : ‘20. 7. 14. 완료
남해 화방사 채진루 요사채겸 유물보관실 공사 : ‘21. 4월 등기예정

○ **(지역활성과)** 노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공사 : ‘20. 4. 24. 완료

○ **(해양수산과)** 수산물 위판장 건립 공사 : ‘21. 10월 등기예정
(국유지 소유권 전환 및 건축물 사용 승인 필요)

다. 검토의견

○ 지적 이후 부기등기를 이행했으며, 현재 미 이행한 부서는 조치하기 바람

10.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가. 권고사항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세출)에 세출예산 집행 기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세출예산 집행 시 부적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 예산 집행을 위해 일부 개정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2020.4.)을 위한 조례 조문 자문 및 조례규칙 심의 시, 현재 자치법규 조례에 규정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세출예산

집행 시 문제가 없으며 조례 조문에 세출에 관한 사항을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 반영 (법무규제개혁팀, 남해군조례규칙심의회)

○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비용(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은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집행 시 모호한 부분 해소

다. 검토의견

○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 시 부적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11. 예산 편성 후 집행률 저조

가. 권고사항

○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이하 집행 현황은 63건에 집행잔액은 10,772,718천원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됨

○ 신중한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변동 발생 시, 추경예산서를 작성 변경·승인 처리하여 신규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권고함

나. 조치결과

○ 2020년 추경(제2회, 제3회) 편성 시 집행 부진사업이나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상 과목을 파악하여 감편성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집행 하고자 하였음

○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신속집행 및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적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

다. 검토의견

○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세밀한 파악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 전년대비 집행잔액의 35%, 741백만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12.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신중한 집행 권고

가. 권고사항

○ 행정과 행정정보화촉진(사무관리비) 전액 미사용, 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시설 정비(시설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하는 등 350,414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함

○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함

나. 조치결과

○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회계연도	40	2,959,694	11	1,836,098	29	1,123,596
2020회계연도	47	5,302,545	7	1,006,543	47	4,296,002

- 20년 예비비 집행의 경우 19년 대비 건수와 금액 증가
- 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재해재난예비비 사용건수, 금액 증가
- 일반예비비의 경우 19년 대비 건수, 사용액 감소
- 예측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

다. 검토의견

○ 예비비 집행 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집행하였음

13. 부적절한 예산 전용·변경 금지

가. 권고사항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은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보충적인 역할에 그쳐야 하며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조정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예산전용		예산변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회계연도	52	3,871,527	3	52,339	49	3,819,188
2020회계연도	57	1,455,567	6	223,894	51	1,231,673

-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전용·변경이 증가 하였으나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건수, 금액 증가함
-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전용·변경 요구 시 사유를 면밀히 심사한 후 승인토록 노력하겠음

다.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변경사용 기준을 준수하였음

14. 사고이월사업비 이월 방법 부적정

가. 권고사항

○ 당초부터 연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실이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

나. 조치결과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77건) 대비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16건) 감소

○ 명시·사고이월 구분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음

다. 검토의견

○ 전년대비 사고이월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이월함

15. 군 소유 토지재산 관리 현행화 철저

가. 권고사항

○ 재산관리 총괄부서, 사업부서, 지적관리 부서와 군 소유 토지의 재산관리 현황이 맞지 않으므로 부서별 수시 대조작업과 상호 협조체제를 통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지적공부 대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함

다. 검토의견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적정하게 시행하여 재산관리대장 현행화에 노력하였음

16. 정수물품 구입 시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가. 권고사항

○ 정수물품 취득·처분 시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 후 취득하여야 하나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누락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함

○ 예산편성에 앞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연찬을 강화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2021년도 남해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 재무과-47713, 2020.11.04.

○ 향후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취득·처분 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음

다. 검토의견

○ 예산 편성 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수물품관리에 노력하였음

17.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미 징수

가. 권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징수)에 따라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하므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1필지, 142,380원 변상금 부과·징수 후 대부계약 체결

다. 검토의견

○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함

18. 공사·용역 설계 변경 지양

가. 권고사항

○ 본청 공사·용역 29건/12,221,250천원과 상하수도사업소 공사 6건/969,877천원이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당초 설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상하수도과)** 사업추진 시, 지하매설물 등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및 공사 시 입회 요청

○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분석 및 대책 강구(재무과-45408, 2020.11.10.)하고 사업장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공유 독려,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공사기간 지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노력

다. 검토의견

○ 주된 설계변경 원인을 분석하고 선 행정절차 이행, 업무연찬 등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함

19. 하자검사 후 e-호조 시스템상 하자보수관리부에 검사내역 입력 소홀

가.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e-호조 시스템 '하자보수관리부' 에 하자검사 결과를 기록·관리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e-호조 시스템 '하자보수관리부' 입력 협조 공문 발송(재무과-24554, 2020.06.08.)

○ 상·하반기 정기 및 매월 하자검사 실시 안내 공문을 통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독려함

다. 검토의견

○ 주기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하자보수관리부 관리를 위해 노력함

20.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활용 확대

가. 권고사항

○ CCTV 단속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개별 차량 단속으로 인력낭비와 행정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곡각지점 주·정차 위반 차량 지속적 단속으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CCTV 신규설치 및 주행형 차량단속 시행 전에 일정 계도기간(행정예고, 현수막 등 홍보) 추진 후에 시행

○ 주행형 단속카메라로 주·정차금지구역 및 남해읍시장은 상시 단속

다. 검토의견

○ 주·정차 단속용 CCTV 및 주행형 차량 단속을 통해 남해군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함

21. 기금운용의 효율성 향상

가. 권고사항

○ 기금의 조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다방면으로 발굴해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있으므로 기금별 존속기간 만료 시 고유 목적 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운영상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폐지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강구하기 바람

나. 조치결과

○ **(주민복지과-양성평등기금)**

- 2021.12.31. 존속기한 만료일에 맞춰 기금을 폐지 예정이었으나, 2021년도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 연장(2026.12.31.까지)
-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운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여 가능
- 일반회계로 편입 될 경우 재정형편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비가 축소될 가능성 있으므로 여성친화도시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이 필요함

○ **(지역활성과-중소기업육성기금)**

- 2020년 목표액 27,400천원이며, 25,993천원을 집행하였음(실집행률 95%)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홍보 확대 : 공고, 안내공문 발송, 유선 안내 등

○ **(재난안전과-재난관리기금)**

- 2020년 기금사업 추진현황(9개 사업, 4,032백만원)
-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활성화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

○ **(보건소-식품진흥기금)**

-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 수저위생포장지 및 위생물품・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활성화를 위해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강구토록 하겠음

○ **(농업기술과-마늘명품화기금)**

- 기금심의위원회 및 농업인단체 의견 재수렴 : 2021년 9~10월경
- 당초 가격안정기금 설치 후 2년이 내 통폐합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 통폐합절차 진행 (입법예고, 심의, 의결 등) : 2022년~23

다. 검토의견

○ 각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기금성과를 반영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검 사 조 서

- **검사대상** : 남해군
- **검사기간** : 2021. 3. 24. ~ 4. 12. (20일간)

검사위원 정 현 옥

일자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3.24.	위촉장 수령 및 방향 협의	
3.25.	검사계획 수립	
3.26.	주요 예산집행 사업 추진 현황	- 설리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 브레이커힐스 남해리조트 조성사업 -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 보물섬 승마랜드 조성사업 - (구)미조 냉동창고 재생사업 - 보물섬 남해 고사리밭 명소 조성사업 - 창선생활체육관 건립 사업
4.1.	현지 사업장 방문 계획 수립	
4.2.	기금 및 채권 현황	
4.5.	검사의견서 중간 작성	
4.6.	마늘명품화기금 현황 및 사용내역	기본 사업현황
4.7.	마늘연구소 주요 사업 현황 및 성과	
4.8.	검사의견서 자료 수집	
4.9.	검사의견서 자료 수집	
4.12.	검사의견서 작성	

검 사 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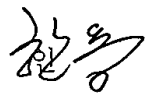
- **검사대상** : 남해군
- **검사기간** : 2021. 3. 24. ~ 4. 12. (20일간)

검사위원 장 동 찬

일자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3.24.	위촉장 수령 및 방향 협의	
3.25.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 징수 · 체납 현황	관련 자료 일체
3.26.	취득세 부과 · 징수 현황	
3.29.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현황	
3.30.	공설해수욕장 민간위탁 현황	기본 사업현황
3.31.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4.1.	예산의 이체 · 전용 · 변경 현황	
4.2.	예비비 집행 현황	
4.5.	군 청사 신축 추진현황	관련 담당자 출석 및 사업 현황
4.6.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현황	
4.7.	군내 소방청사 현황	
4.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리 및 집행 현황	
4.9.	검사의견서 자료 수집	
4.12.	검사의견서 작성	

검 사 조 서

- **검사대상** : 남해군
- **검사기간** : 2021. 3. 24. ~ 4. 12. (20일간)

검사위원 이 한 용 

일자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3.24.	위촉장 수령 및 방향 협의	
3.25.	주요 관광지 입장료 수입 현황	
3.26.	국·도비 반환금 현황	국·도비 보조금 수령 및 반환내역
3.29.	하수도 사용료 세입처리 현황	
3.30.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3.31.	공모사업 선정 현황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4.1.	공사 설계 변경 현황	
4.2.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명시이월사업 관련 자료
4.5.	공공시설물 하자 검사 실시 현황	
4.6.	문항 전원마을 조성 사업 현황	기본 사업현황
4.7.	화계 전원마을 조성 사업 현황	기본 사업현황
4.8.	검사의견서 자료 수집	
4.9.	검사의견서 자료 수집	
4.12.	검사의견서 작성	

검 사 조 서

- **검사대상** : 남해군
- **검사기간** : 2021. 3. 24. ~ 4. 12. (20일간)

검사위원 조 봉 수 (인)

일자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3.24.	위촉장 수령 및 방향 협의	
3.25.	재무재표 검토의 적절여부	재무재표 계약서, 검토업무에 대한 확인서, 수행결과 보고서
3.26.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후속조치여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조치결과 자료
3.29.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 처리 현황	
3.30.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금고잔액증명서 등
3.3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세입금 과오납 현황	
4.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 잔액 현황	금고잔액증명서 등
4.2.	기금 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	-기금명세 및 금고잔액증명서 등
4.5.	예비비 지출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	
4.6.	사고이월사업비 현황	
4.7.	-예산의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유재산 현황	관련자료
4.8.	성과보고서 관련 현황	
4.9.	검사의견서 자료 수집	
4.12.	검사의견서 작성	